

教育公務員法에 있어서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의 問題點

發表者 金 鍾 優
 <光州高等學校 司書教師>

本人은 1963. 12. 6. 法律第1622號로
 改正된 教育公務員法에 司書教師의 職階
 가 새로이 制定되었다기에 은근히 큰 期待
 를 가지고서 새 法을 뒤지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失望을 했습니다. 司書教師는
 적어도 一級正教師와 對等한 待遇가 있어
 야 하리라고 믿어온 이 사람으로서는 劣等
 感마저 느꼈습니다.

教育公務員法 第3條 別表1에는 司書教師
 의 資格基準으로서

『① 大學卒業者로서 圖書館學을 專攻하
 고 所定의 教育課程을 履修한者』

② 中等學校 准教師以上의 資格證 所持
 者로서 所定의 司書教師 義成講習을 받은
 者』로 规定하였습니다. ②의 境遇는 當面한
 需要에 充當하기 위한 補充的인 것이고
 學校圖書館이 本軌道에 오르기 위해서는
 ①의 司書教師가 이에 任해야 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一般教師中 司書教師
 講習履修하는 一般教師의 例에 따라
 2級正教師에서 1級 校監 校長에로의
 升進의 길이 마련되어 있으니 論外로 하고
 問題는 圖書館學科를 專攻한 司書教師의
 境遇라고 보겠습니다. 적어도 學校教育의
 心臟機關을 擔當할 司書教師의 職位가 一般教師乃至 教導教師보다 低位에 있다는것
 은 다시한번 生覺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

도 官僚主義 思考方式에서 脱皮를 못하고
 있는 現實情下에서 어찌 所與의 使命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한갓 書庫자기 冊
 심부름꾼에 不過한 待遇를 免치 못할 것
 이며 教務나 庶務의 隸屬下에 唯唯若若할
 뿐 使命感에서 울어난 創意性의 發揮란
 期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司書教師로 하여금 司書教師
 의 使命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司書教師
 는 教師의 教師라는 稽持와 識見을
 갖고서 은근히 學校教育을 리이드해 나
 아가야 한다는 使用感과 热誠을 갖도록
 하여야 할줄 압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
 서는 司書教師의 義成課程도 一般教師보다
 높은 水準을 確保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적어도 師範大學에 司書教師
 課程을 둔다거나 또는 一般大學課程을
 마치고 中等學校 教師資格證을 가지고 한
 거름 더 나아가 司書教師資格證을 갖도록
 하거나 또는 司書教師 資格證은 一般教
 師資格證보다 優位를 갖도록 하여야 하리
 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將來는 一般教育運營責任者
 에도 司書教師出身이 많이 進出하도록 하
 여야 學校教育의 正常化乃至는 國民教育
 의 正常化를 期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外國의 例로 보아서도 司書教師는 적어도 一般教師보다 優待되고 校監職과 對等한것이 常例인듯 합니다. 希望의 源泉 教智의 供給基地가 되어야할 學校圖書館에 優秀한 人材를 얻지 못할진엔 設令財源과 施設의 完備를 본다 하여도 羅針盤없는 배가되고야 말 것입니다.

現法規下에서도 一般 行政公務員에 比한다면 決코 뛰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基本階級이 4級甲類乃至 3級乙類의 中間쯤은 되니까요 그러나 教育公務員으로서는 그 任務가 學校教育全

般乃至는 國民教育의 全域에 끼치는 至大한 影響力에 비추어 볼때 遠大한 視點에서 마땅히 再考되어야 할 重大한 課題라고 봅니다.

그리고 教育公務員法뿐만 아니라 圖書館法이 公布된지 於焉 1年이 經過한 오늘날까지 施設基準令이 制定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文教行政 當路者뿐만 아니라 民族 國家의 經綸을 맡고있는 選良들의 良識을 國家百年大計를 為하여 促求하는 바입니다.

本協會 出版物의 代金 納付를 苦待합니다.

本協會에서 發行한 「韓國十進分類法, 韓國目錄規則」「學術雜誌索引」을 引受하시고 아직도 冊代를 未納하신분은 11月末日까지 期必完納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周知하실줄 믿습니다만 今年內에 이들 冊代金으로써 完遂해야 할 餘他事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財政事情이 어려우시드라도 圖書館業事發展에 이바지하시는 뜻에서 上記期間內에 꼭 納入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 드립니다.

事務局